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26 호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742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74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74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745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영종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42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이 유

- 사무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정비

☐ 주 요 내 용

- 가. 구 본청 분장사무 정비 (안 별표 1)

☐ 의 건 제 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 전 화 : 032)760-7033(FAX 032)760-7039)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감사실 분장사무 중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공갈등 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 개정부서만 작성 구 본청 실·과 분장사무 <table border="1"> <tr> <th>부서명</th><th>분 장 사 무</th></tr> <tr> <td>감사실</td><td>1. ~ 19. (생략)</td></tr> <tr> <td></td><td><신설></td></tr> </table>	부서명	분 장 사 무	감사실	1. ~ 19. (생략)		<신설>	[별표 1] ※ 개정부서만 작성 구 본청 실·과 분장사무 <table border="1"> <tr> <th>부서명</th><th>분 장 사 무</th></tr> <tr> <td>감사실</td><td>1. ~ 19. (현행과 같음)</td></tr> <tr> <td></td><td>20. 공공갈등 관리</td></tr> </table>	부서명	분 장 사 무	감사실	1. ~ 19. (현행과 같음)		20. 공공갈등 관리
부서명	분 장 사 무												
감사실	1. ~ 19. (생략)												
	<신설>												
부서명	분 장 사 무												
감사실	1. ~ 19. (현행과 같음)												
	20. 공공갈등 관리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4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 등에 따른 정원 조정

□ 주 요 내 용

가. 총 정원 : 772명 → 775명 (증 3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52명 → 754명 (증 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 21명 (증 1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 765명 → 768명 (증 3명)
- 일반직 6급 이하 : 716명 → 719명 (증 3명)

□ 의 건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전 화 : 032)760-7033(FAX 032)760-7039)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72명이며”를 “775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52명”을 “75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명”을 “2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772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775명</u> 이며----- --.
1. 집행기관의 정원: <u>752명</u>	1. ----- <u>754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20명</u>	2. ----- <u>21명</u>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동
총 계		775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계		768	-			
3급		1	1	-	-	-
4급		6	5	-	1	-
5급		42	28	2	6	6
6급 이하 계		719	-			
별정직계		6	-			
6급 상당 이하 계		6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별표 3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구 및 정원의 변동

1) 기구 변경 : 증 1팀

2) 정원 변경 : 일반직공무원 3명 증원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나. 추계 결과 (202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명, 원)

구 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계	
총 계	146,330,421							
1. 인건비	129,067,121							
가. 기본급	99,437,004							
		○ 7급(13호봉)	3,545,186	1		12	42,542,226	
		○ 8급(6호봉)	2,497,352	1		12	29,968,218	
		○ 9급(3호봉)	2,243,880	1		12	26,926,560	
나. 정근수당	8,286,417	○ 정근수당	8,286,417			2	8,286,417	100%
다. 정액수당	21,343,700							
1) 가족수당	3,960,000	○ 배우자	40,000	3	1.0	12	1,440,000	
		○ 존속	20,000	3	1.0	12	720,000	
		○ 자녀	50,000	3	1.0	12	1,800,000	
2) 정근수당가산금	1,680,000	○ 10년~15년미만	60,000	1		12	720,000	
		○ 5년~10년미만	50,000	1		12	600,000	
		○ 5년 미만	30,000	1		12	360,000	
3) 정액급식비	5,760,000	○ 일반직	160,000	3		12	5,760,000	
4) 명절휴가비	9,943,700	○ 명절휴가	8,286,417	3		2	9,943,720	120%
2. 직무수행경비	7,080,000							
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000	○정원증가	60,000	1		12	720,000	민원지점 의회사무
나. 직급보조비	6,360,000							
		○ 7급	180,000	1		12	2,160,000	

구 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계	
		○ 8~9급	175,000	2		12	4,200,000	
3. 포상금	10,183,300							
가. 성과상여금	10,183,300							
		○ 7급	3,087,665	1	1.30	1	4,013,960	A등급
		○ 8급	2,564,798	1	1.30	1	3,334,230	A등급
		○ 9급	2,180,860	1	1.30	1	2,835,110	A등급

※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 사무, 의료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입			해	당	없	음	
세출		146,330	151,452	156,752	162,239	167,917	784,690
1. 인건비		129,067	133,584	138,260	143,099	148,107	692,117
	가. 기본급	99,437	102,917	106,519	110,248	114,106	533,228
	나. 정근수당	8,286	8,576	8,876	9,187	9,508	44,433
	다. 정액수당	21,344	22,091	22,864	23,664	24,493	114,456
2. 직무수행경비		7,080	7,328	7,584	7,850	8,124	37,966
	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	745	771	798	826	3,861
	나. 직급보조비	6,360	6,583	6,813	7,051	7,298	34,105
3. 포상금(성과상여금)		10,183	10,539	10,908	11,290	11,685	54,606
재원조달		146,330	151,452	156,752	162,239	167,917	784,690
자 체 수 입	소계	146,330	151,452	156,752	162,239	167,917	784,690
	지방세	146,330	151,452	156,752	162,239	167,917	784,690
	세외수입	-	-	-	-	-	-

※ 상승률은 3.5%(2026년 공무원임금인상률)로 가정함

4.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4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이 유

-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 등에 따른 정원 조정
- 균형있고 합리적인 직급·직렬 체계 마련

□ 주 요 내 용

가.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변경 (안 별표)

- 총 정원 : 772명 → 775명 (증 3명)
- 1) 본 청 : 582명 → 583명 (증 1명)
- 2) 의 회 : 20명 → 21명 (증 1명)
- 3) 보건소 : 60명 → 61명 (증 1명)
- 4) 동 : 110명 (변동 없음)

□ 의 건 제 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전 화 : 032)760-7033(FAX 032)760-7039)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단위: 명)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동
총 계	775	583	21	61	110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68	577	20	61	110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과학기술서기관	1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2	2			
5급 소계	42	28	2	6	6
행정	13	11	2		
의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6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6급 소계	165	138	4	10	13
행정	61	53	3		5
세무	8	8			
사회복지	5	5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보건	1	1			
시설	10	10			
행정·세무	6	5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7	11			6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2	2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등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21	21			
행정·방송통신	1	1			
보건·간호	6			6	
행정·공업·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운전	3	2	1		
사무운영	2	1			1
7급 소계	249	197	8	17	27
행정	97	73	7		17
세무	15	15			
전산	4	4			
사회복지	24	14			10
공업	4	4			
농업	1	1			
녹지	4	4			
해양수산	2	2			
보건	2	1		1	
간호	3			3	
보건진료	1			1	
환경	4	4			
시설	24	24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9	9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9	9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보건·환경	2	2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간호	5			5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운전	9	8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사무운영	1		1		
8급 소계	228	159	4	21	44
행정	91	68	4		19
세무	6	6			
전산	2	2			
사회복지	25	12			13
공업	1	1			
농업	3	3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7	4		3	
의료기술	1			1	
간호	14	1		7	6
환경	4	4			
시설	15	1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5	9			6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행정·방재안전	2	2			
전산·세무	1	1			
공업·시설	1	1			
녹지·시설	1	1			
보건·간호	6			6	
간호·보건진료	1			1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3	3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등
운전	4	3		1	
9급 소계	77	49	2	6	20
행정	30	17			13
세무	3	3			
사회복지	9	4			5
숙기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1	1			
의료기술	1			1	
환경	1	1			
시설	6	6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3			3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운전	1				1
별정직 계	6	5	1		
별정6급상당 계	2	2			
별정(비서요원)	2	2			
별정7급상당 계	3	2	1		
별정(비서요원)	3	2	1		
별정8급상당 계	1	1			
별정(비서요원)	1	1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45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이 유

-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전결처리사항 정비

□ 주 요 내 용

- 가. 구 본청의 사무전결사항 개정 (안 별표 1)
 -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개정

□ 의 건 제 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전 화 : 032)760-7033(FAX 032)760-7039)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통의 단위사무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실·단·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공 통	1. 복무 가.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 1) 4급 2) 5급 ※ 단, 실·단의 경우 부구청장 전결 3) 6급 이하 나. 연가, 휴가, 병가, 공가, 조퇴 및 외출 1) 4급 2) 5급 ※ 단, 실·단의 경우 부구청장 전결 3) 6급 이하 다. 초과근무 사전명령 및 확인내역 보고 라. 초과근무 사후명령 ※ 단, 실·단·동의 경우 실·단·동장 전결	기안 기안		○ ○ ○ ○	○ ○	○ ○	

별표 1 감사실의 단위사무 중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실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감사실	22. 공공갈등 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나. 갈등민원 조사 및 자료 수집 다.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 및 매뉴얼 보급) 라. 공공갈등관리 결과보고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별표 1 총무과의 단위사무 중 제36호를 삭제하고, 제37호부터 제85호까지를 각각 제36호부터 제84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